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13. 4.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제출)일자 및 발의(제출)자 : 2012년 9월 12일

정문헌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12년 9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0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2년 11월 19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원회부

제3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3년 4월 22일) 상정 · 심사 · 수정의결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13년 4월 24일)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문헌의원)

통일부는 2012년 7월 3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배용근)

가. 개 요

이 개정안은 통일부에서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 등에 대비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개정안은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희망자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유전자 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현행	개정안
	<p>를」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유전자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국가가 이를 수집하여 보관·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정부1) 역시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 유전자 정보 보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1) 통일부 의견

<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이산가족 등록 현황(2012년 8월 기준) >

○ 연령별

(단위 : 명)

90세이상	80~89세	70~79세	60~69세	59세이하	계
5,714	29,444	25,113	9,361	6,371	76,003

○ 생존·사망

(단위 : 명)

생존자	사망자	신청자
76,003	52,774	128,747

다만, 유전자 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최상급의 개인정보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나. 검사대상자의 동의 절차 명확화 필요

개정안 제8조의2제1항은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²⁾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유전자검사기관 등) ①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

에 따라 국가기관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인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3)에 따른 서면 동의를 이 개정법률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이 개정법률안의 부칙에 따르면,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자가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의 목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 시킬 것인지 여부
4.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박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동의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의 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절차 및 동의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2년 2월 1일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13년 2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야 할 것임.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유전자검사의 동의 관련 규정은 제51조4)이므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서면 동의를 해당 조항에 명시하여 검사대상자의 유전자검사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 시행예정)」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意的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意的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유전자정보 보관·유지의 주체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⁵⁾는 유전자검사 동의서, 유전자검사 결과, 인체유래물은행으로의 검사대상물 제공에 관한 기록 등을 “유전자검사기관”이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이 유전자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보관·유지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상급 개인정보인 유전자검사결과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별도의 관리 기관을 통한 보관·유지를 규정하고 “유전자검사기관”이 해당 검사대상물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 시행예정)」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제51조에 따른 동의서
 2. 유전자검사 결과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기록
-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검사대상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항6)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이산가족 유전자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유전자은행⁷⁾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이를 명시하여 유전자은행을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관·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임.

다만, 2013년 2월에 시행 예정인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개정법률의 부칙⁸⁾에 따라 유전자은행이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⁹⁾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결과 등을 보관·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신고) ①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의 승인을 얻어 유전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지원의 승인을 얻은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유전자은행"이라 함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이하 "유전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부 칙

제3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본다.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 시행예정)」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아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유전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유사 개별 입법례와 같이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관리기관 및 관리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전정보 수집·관리 관련 유사 입법례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실종아동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유전자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벌칙조항 신설의 필요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유전자검사결과 등의 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목적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유전자 관련 정보는 최상급 개인정보이며, 이같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규정된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경우, 정부주관 사업에 대한 공신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이 개정법률안에 목적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7호¹⁰⁾가 유전자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무단 유출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정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유전정보등의 보호) ① 유전자은행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얻거나 알게된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마. 기 타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이라는 유전자 검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유전자 검사에 반드시 당사자의 사망을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목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즉, 생존자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상봉하지 못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유전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신원확인”·“유가족 확인” 등과 같이 신원불상 또는 사망을 전제하는 표현보다는 “가족관계 확인”과 같이 생존·사망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문헌 위원)

- 유전자검사 대상자의 동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 약간의 자구정리가 있었음.

8.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 4.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개정안은 남북 이산가족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 대상자의 동의여부,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의 보관·유지에 필요한 사항, 유전자검사 시 취득한 비밀 누설 및 도용에 대한 벌칙마련, 유전자검사 업무의 관련전문기관 위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수정·보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유전자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유전자검사 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항).
- 나.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 다. 관련 자료 보관·유지 시 개인 식별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 라. 유전자검사에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 마. 통일부장관이 유전자검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 바. 유전자검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 절차, 유전자 검사결과의 사용, 관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중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을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 2제5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관련 전문기관과”로, “제127조 및 제129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부칙 중 “2013년 2월 2일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p>제8조의2(유전자 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p>	<p>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p>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제1항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실시

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

큰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유전자검사결과의 사용, 관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관련 전문기관과-----
---제129조-----

-----.

제17조(벌칙) 제8조의 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부 칙 이 법은 <u>2013년 2월 2일부터</u> 시행한다.</p>	<p>부 칙 이 법은 <u>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한다.</p>
--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

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 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중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을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 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제127조 및 제129조”를 “제129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의2(유전자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보관·유지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외의 정보 또는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u></p> <p><u>④ 유전자검사에 종사했던 사</u></p>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일부장관은 유전자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 자료의 보관·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일부장관이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유전자검사 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제129조-----

-----.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